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1278
----------	------

발의연월일 : 2024. 7. 2.

발 의 자 : 장경태 의원 등 170인

주 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김영철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김영철

직 위 : 검사

탄핵소추사유

피소추자는 검사인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형사처벌과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증인 장시호에게 수사상 지득한 기밀로서 이재용에게 불리한 질문과 답변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면서 이

를 외워서 증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모해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다.

피소추인은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자신과 함께 근무하였던 상관이자 현재 자신에 대한 인사권자인 정무직 공무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처 김건희 여사가 문제된 ①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사건, ②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사건, ③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에서 통상적인 사건과는 달리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한 후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

반면, 피소추자는 별건수사가 금지되고 정당법위반 혐의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별건에 해당하는 정당법위반 혐의로 위법한 직접 수사를 개시하였고, 공소제기 전에 정당법위반에 관한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하였다.

이처럼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권한을 정치

적 중립에 반하여 불공정하게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여 형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수차례 자행하였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불법성이 매우 큰바, 그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였고, 2017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이른바 ‘박영수 특검’에 파견되어 당시 팀장 윤석열의 지휘를 받은 바 있으며, 2022. 7.부터 2023. 9.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로서 재직한 바 있다.

가. 피고인 장시호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피소추자는 박영수 특검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의 조카인 피고인 장시호와는 문자로 상호 반말을 주고받고 오빠라고 부르며 하는 등

통상적인 검사와 피고인 사이와는 달리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소추자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특검 측에 유리한 진술과 증언으로 일관했던 장시호를 위하여 그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만을 구형하였고, 그즈음 장시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7. 12. 6. 피고인 장시호에게 이례적으로 검사의 구형보다 중하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명하였다.

피소추자는 2017. 12. 6. 저녁에 당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수감 중이던 피고인 장시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달래면서,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장시호에게 자신이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지득하거나 정리한 직무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이재용에 대한 혐의 사실 및 개인정보로서 이재용에게 불리한 내용의 질문과 답변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고는 “이재용 재판에서 증언을 할 내용이니 외우라”고 말했고, 장시호는 이에 따라 자신의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증언 내용을 외운 다음 2017. 12. 11. 이재용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 사건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나. 별건수사 및 수사권 없는 수사와 피의사실공포

피소추자는 별건수사가 금지되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외에는 수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경부터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정근이 사업가로부터 불법적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 개인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를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통화녹음 등의 증거를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고 갔다는 정당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형사소송법상 금지된 별건수사를 하였고,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인 정당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개시하여 검찰청법을 위반하였다.

피소추자는 2023. 9. 5. 조선일보 이세영, 방극렬 기자에게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28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백혜련, 이성만, 임종성, 전용기, 허종식, 황운하 의원에게 300만 원짜리 봉투 1개씩을 전달했다”라고 말함으로써, 해당 의원들의 정당법위반 혐의에 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였고, 이 내용은 같은 날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되었다.

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직무유기

피소추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로서, 2022. 7.

부터 2023. 9.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처 김건희 여사가 문제된, ①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사건, ②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사건, ③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다.

피소추자는 자신의 검찰 선배이자 자신에 대한 인사권자인 정무직 공무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①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는 서면조사만 하였을 뿐 단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않은 채 2023. 3. 2.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②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2023. 3. 6.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결정을 하였으며, ③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에서 피의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2023. 3. 6.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결정을 한바, 이는 검사로서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의식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직무유기죄라는 중범죄일 뿐만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처 김건희 여사에 부당하게 유리하게 검찰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

무를 위반한 것이다.

2.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가. 헌법 제7조 및 제27조 위반, 검찰청법 제4조 제3항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 국민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 진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검찰청법 제4조는 제1항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특정 정치 세력을 편들어 그 정치 세력에 속한 정치인과 관련자들을 부당하게 유리하게 봐주기식으로 수사하고, 그와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하여는 무리하게 권한을 남용하고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과도하게 수사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저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이러한 헌법 및 법률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과 같이 근무했던 검사 선배이자 자신에 대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처 김건희 여사가 문제된 사건들에서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김건희 여사에게는 생략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도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무혐의 결정으로 일관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반면, 피소추자는 별건수사가 금지되고 검사의 수사권이 부패 및 경제범죄로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다른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의 정당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수사권도 없이 별건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수사를 하였고, 수십여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구속 수사는 물론

이고 형법이 금하는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소추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과 검찰청법상의 권한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부당하게 유리하게 행사하고, 그에 반대되는 정치인들에게는 위법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과도하게 행사한바, 이는 헌법 제7조 제1항과 제27조 위반이자 검찰청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는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국가 형벌권 행사의 주체로서 수사권 및 공소제기·유지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검사라는 점에서 그 헌법상의 의무는 매우 중차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헌법상 의무와 검찰청법에서 정한 직무를 위반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무이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

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어느 공무원이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피소추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검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구속되어 궁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게 함으로써 모해위증 교사의 죄를 범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수사를 포기하는 수준으로 부당하게 유리하게 수사권을 행사한 반면 반대 당 정치인들에게는 수사권 없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강행하고 피의사실공표와 같은 형사상 범죄를 자행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수사권을 행사한바,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준수해야 할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형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법령상 부여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관련 법률조항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수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 즉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 검찰청법 위반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다목에서는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선거범죄는 검찰청법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로 검찰청법이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가 아니다.

개정 전 검찰청법[법률 제16908호, 2020. 2. 4., 일부개정]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규정하였으나, 2022. 5. 9. 개정된 검찰청법[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은 여기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하였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행정부는 국회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하위 법규를 정립할 수 있을 뿐이다. 권력 분립의 헌법 원칙상 국회가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선거범죄 등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로서 검찰청법에서 삭제한 이상, 행정부가 임의로 대통령령을 통해서 선거범죄 등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로 삼을 수 없다.

피소추자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대상이 아닌 선거범죄인 정당법위반 피의사실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바, 이는 검찰청법 위반이다.

라. 형법 위반

1) 형법 제152조 모해위증 교사

형법 제152조는 제1항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으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피고인 이재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 사건 공판에서 자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 장시호로 하여금 피고인 이재용에게 불리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던바, 이는 모해위증 교사죄로 처벌받아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2)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수사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소추자는 검사로서의 수사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장시호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바, 이는 장시호로 하여금 의무없는 증언을 하게 하고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피소추자는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

3)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유기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행할 직무가 있다. 피소추자는 자신의 인사권자인 정무직 공무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제대된 수사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처 김건희 여사가 문제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피소추자는 피소추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직무 수행을 포기한 것인바, 피소추자는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범하였다.

마. 헌법 제27조 4항(무죄추정의 원칙),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2항 위반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2항은 「검사 ·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피소추자는 피의자 강시호에게 자신이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지득하거나 정리한 직무상의 비밀인 이재용에 대한 혐의 사실 및 개인정보로서 이재용에게 불리한 내용의 질문과 답변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면서 이를 외우라고 한바, 이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서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범한 것이다.

검사 및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으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소추자는 공소제기 전에 기자에게 민주당 국회의원의 실명을 밝히며 이들이 돈 봉투를 받았다고 말함으로써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당법위반의 피의사실을 공표한바,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거명된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는 동시에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인 수사과정에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누설한 것이 된다.

즉, 피소추자는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형사소송법 제198
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바. 형사소송법 (별건수사 금지 규정) 위반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은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
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
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
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
하여서도 아니 된다.」 고 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별건수사를 금지
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이정근에 대한 알선수재 등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를 통
하여 확보된 휴대전화통화녹음과 같은 증거를 내세워 알선수재 등 개
인 비리와 관련 없는 사건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고 갔다는 정당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이정근으로
부터 이에 대한 자백을 받아 낸바, 이는 검찰청법이 정하고 있는 별건
수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3. 탄핵의 필요성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 또는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배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한 절차이다.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 탄핵심판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형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의 관행상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일반공무원들이라면 파면될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에도 검사와 같은 고위공직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형평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바로 이런 상황과 같은 경우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탄핵

소추제도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라 할 것이다.

가.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 제1항 및 제27조, 검찰청법 제4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123조, 제122조, 제126조 및 제127조,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및 제4항 등을 위반했다.

나. 직무집행 관련성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 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피소추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

1) 피소추자의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로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역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위반 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위해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범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범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고려할 때, 탄핵심판제도가 탄핵소추대상인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중대성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탄핵사유인 위헌·위법행위 그 자체의 중대성과 함께, 공직의 특성, 즉 해당 공직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임의 정도, 임기와 신분보장의 정도, 해당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 수준, 파면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공백이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한 법익 형량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헌법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 법적 책임추궁이 곤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는 경우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헌법위반을 방지하며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제도의 궁극적 목적이자 핵심적 기능이라는 점 또한 파면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2) 피소추자 파면의 필요성

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엄중하고 심각하다.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

나) 피소추자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피소추자는 수사 및 공소제기 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자 고위직 공무원이다.

범죄를 저지른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피소추자의 직에 부여된 임무의 핵심이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모해위증 교사행위를 통하여 정당한 수사권을 넘어 피고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의 증언까지 조작해 낸바, 이는 모해위증 교사라는 형법상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헌법위반이다.

또한, 피소추자는 그와 친분 관계에 있고 그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하여는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는 등 통상적인 수사에 비하여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한 후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정당의 의원들에 대하여는 별건수사는 물론이고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는 범죄를 검찰청법에 위반하여 직접 수사하고 피의사실공표라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등 과도하게 수사권을 남용한바, 이는 명백히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한 것이고, 검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정치에 사실상 개입한 것으로 ‘국가 형벌권

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과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명백히 저버린 것이다.

또한, 피소추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 진행 도중 언론에 유죄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 검사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인 행위이다. 피소추자의 피의사실공표행위는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함으로써 피의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 없이도 사실상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인권의 침해를 결과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피소추자의 위법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검사의 형사절차상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헌법 질서 및 국가의 적법한 가동원리를 신뢰하는 많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바, 이는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파면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공직자의 ‘범위반 행위의 중요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에서 객관적인 비교형량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검사인 피소추자가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헌법질서와 현행 형법 등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파면으로 인한 직무공백이 미치는 효과에 비해 파면의 정당성이 월등하

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피소추자의 위법행위는 검사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있다.

다) 소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고위공직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제7조 제1항, 제27조 등의 헌법규범을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위와 같이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심대함에 비해 피소추자를 파면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공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질서 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

4. 결 론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 제1항 및 제27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152조, 제123조, 제122

조, 제126조 및 제127조,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및 제4항 등을 위반했다.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 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로서의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직무집행에 있어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과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피소추자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① 2024. 5. 6. 뉴탐사 < [장시호 녹취파일 단독입수] 윤석열, 한동훈 사단의 더러운 거래, 피의자와 불륜, 증언연습, 회유공작은 일상이었다 >

② 2023. 9. 5. 조선일보 <[단독] 돈봉투 수수 정황 현역의원 19명 법정서 공개 >

③ 2023. 3. 5. 한겨레신문 <‘코바나 무혐의’논란...“직무관련성 인정 않

는 게 더 힘들다”>

④ 2023. 3. 6. 연합뉴스 <검찰, 김건희 '삼성전자 고액 전세권' 의혹
무혐의>